

# 조 정 신 청 서

접 수 인

신 청 일 2000.00.00.

사 건 명 손해배상(자)

신 청 인 ○○○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○○구○○길○○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신청인 ◇◇◇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ㅇㅇ구ㅇㅇ길ㅇㅇ(우편번호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20 . . .

조정기일소환장 통

위 서류를 영수함

2000. 0. 0.

신청인 ○○○(서명 또는 날인)

| 조정신청사항가액 | │ 금 3.736.876원│ | 수 수 료 | 금 1.800원  | 송 달 료 | 급 32.500원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| 2 3,133,513 2   | , , , | 1 2,000 2 | 0 -   | E 3 <b>=</b> ,333 E |

(인지첩부란)

### 신 청 취 지

- 1.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,736,876원 및 이에 대한 20〇〇. 〇. 〇.부터 이 자 건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한다.
- 2. 조정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. 라는 조정을 구합니다.

### 신 청 원 인

#### 1. 신분관계

신청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직접 피해자이고, 피신청인은 울산〇〇다〇〇〇○호 베스타 승합자동차의 소유자겸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불법행위자입니다.

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

신청인은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소재 올림피아호텔 뒤편 소방도로를 걸어가고 있을 즈음, 피신청인이 울산○○다○○○○호 베스타 승합차를 운행하여 위 호텔 주차장 쪽에서 호텔 뒤편 공터로 진행하게 되었는바,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차량 운전석 앞 백밀러 부위로 보행 중이던 신청인을 충격, 전도케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염좌, 견관절, 좌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.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로서, 위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불법행위자로서 신청인이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.

#### 3. 손해배상의 범위

#### 가. 일실수입

신청인은 이 사고로 치료를 위하여 통원치료 47일간 아무런 일에도 종사하지 못하여 금 1,736,876원의 일실손해를 입었습니다.

#### 【계 산】

20○○. 9.경. 도시일용노임(건설업보통인부): 금 50.683원

월평균 가동일수 : 22일

47일의 호프만지수 : 1.5577[=1개월의 호프만지수(0.9958)+{2개월의 호프만 지수(1.9875)-1개월의 호프만지수(0.9958)}×17/30]

금 1,736,876원[=금 50,683원×22일×1.5577, 원미만 버림]

나. 치료비



치료비는 피신청인이 가입한 책임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치료비 금 1.000.000원을 청구합니다.

#### 다. 위자료

신청인의 나이,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그 결과, 치료기간 등 신청인의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금 1,000,000원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.

#### 4. 결론

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,736,876원(일실수입금 1,736,876원+향후 치료비 금 1,000,000원+위자료 금 1,000,000원)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20 ○ ○. ○. ○.부터 이 사건 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12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신청에 이른 것입니다.

### 입 증 방 법

| 1. 갑 | 제1호증 | 주민등록표등본 |
|------|------|---------|
|      |      |         |

1. 갑 제2호증 진단서

1. 갑 제3호증 치료확인서

1. 갑 제4호증 향후치료비추정서

1. 갑 제5호증 자동차등록원부

1. 갑 제6호증의1, 2 월간거래가격표지 및 내용

## 첨 부 서 류

| 1. 위 입증방법 각 | 1통 |
|-------------|----|
|-------------|----|

1. 신청서부본 1통

1. 송달료납부서 1통

2000. 00. 00. 위 신청인 000 (서명 또는 날인)

### ○○지방법원 귀중

| 제출법원   | ※ 아래(1)참조  | 소 멸 시 효 기 간 | 0 | ○년(☞소멸/ |       |
|--|--|-------------|---|---------|-------|
| 제출부수   | 신청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 |             | 출 | 관련법규    | 민사조정법 |
| 불복절차 ·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은 조정정본이 송달된 날부<br>및 기간 터 2주일 이내(민사조정법 제34조) |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|
| 비용   | ·조정수수료 : ○○○원(☞산정방법)<br>·송달료 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)  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|
| 기 타  | • 민사조정법 제30조, 제32조에 의하여 조정담당판사가 한 조정에 갈음한 결정은 같은 법 제34조 제4항에 정한 바와 같이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취하 또는 각하되어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투어졌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,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, 그 결정에 확정판결의 당연무효 사유와 같은 사유가 없는 한 재심의 소에 의하여만 그 효력을 다툴 수 있음(대법원 2000. 9. 29. 선고 2000다 33690 판결). |             |   |         |       |

#### ※ (1)관할법원(민사조정법 제3조)

- 가. 조정사건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, 지방법원 지원, 시법원 또는 군법원의 관할로 함.
  - 1. 피신청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통재판적 소재지
  - 2. 피신청인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
  - 3. 피신청인의 근무지
  - 4. 분쟁의 목적물 소재지
  - 5. 손해발생지
- 나. 조정사건은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소송사건의 전속관할법원 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법원의 관할로 할 수 있음.
- 다.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이나 손해발생지 관할법원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음.

●●●분류표시 : 민사소송 >> 조정신청